현대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현대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사업장 정보	고객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여부 신규가맹점 복	 수가맹점 (복수가맹점 개설	사유:)
	사업자등록번호	Σ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	록증의 상호명을 기재해 주세요.		영문상호명 미작성 시	카드사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간판명 ¹⁾ 간판 성	상호명을 기재해 주세요.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소 기급적 도로당	경주소로 기재해 주세요.			영업	개시일
	업태		종목	주요 취급품목		
	주유소 구분(주	유소 업종만 해당)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기타	
	결제계좌	은행명 하나은행	기타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u></u>	대표자와의 관계	본인 법인	기타
	단말기정보	단말기 종류 POS	CAT 기타	단말기 식별번호	모델명 - 버전	
		등록 단말기 설치		:)
	선불카드 수납		하지 않음 		다다다 여러나	
	본점	담당부서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법인사업자 기재)	본심 수소			담당자 이메일	
4144	주민등록번호				·	성별 <u></u> 남 _ 여
	대표자명 한	글 ·······	영문		휴대폰	
	자택 주소 기급적	덕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주세요			자택 전화 	
	이메일 주소 리				가입 확인서 수신	방법 이메일 우편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d d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김
						변경, 해지 및 정지, 주소 변경 등) 처리 뒤
공동대표자 1)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	민등록번호	=	국적 *외국인일 경우
	영문 성명		·····	 락처		성별 🗌 남 🗌 여
공동대표자 ²⁾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	민등록번호	=	국적 *외국인일 경우
	영문 성명		연	락처		성별 남 여
공동대표자 3)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	민등록번호	ŧ	국적 *외국인일 경우
	영문 성명		····· 연	 락처		성별 🗌 남 🗌 여
공동대표자 4)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당	민등록번호	=	국적 *외국인일 경우
	영문 성명		연	락처		성별 🗌 남 🗌 여
공동대표자 5)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주	민등록번호	=	국적 *외국인일 경우
	영문 성명		연	락처	Į.	성별 🗌 남 🗌 여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 영업신고 대리인 접수 시 추가 끌 ※ 제출하신 서류는 빈 카드사 기재사항	록증 사본, 결제계조 록증 사본, 결제계조 · 허가증(또는 업종별 필요 서류 : 위임장, [ト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ト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별 등록증), 주주명부 등	여권 사본(대표자가 외국인을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	본(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압 !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 우)	하기부등본, 사용인감계(사용	
대리점 정보	모집처코드		모집대리점명		실사자	
<u> </u>	휴대폰		대리점 연락처			
현장실사 현황	주소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매장 여부	유 모
	판매 형태	일반 방문 통신	인터넷 기타 ()	취급 품목	

고객 확인 관련 추가 기재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리(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고객의 신원 확인을 위한 고객 정보와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고객님이 제공한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통	사업자유형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 금융기	l관				
	고위험업종 여부	해당 없음 게금속판매업	해당 없음 기금속판매업 대부업 카지노사업 환전업 가상통화취급업					
	거래대금 원천	사업소득 기부/후원/정부/	지원금 자산 및 담보물처분 기타 ()				
	거래 목적	시업운영 기타 ()					
법인사업자	상장 여부	상장 비상장						
	상장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상장	뉴욕증권거래소 NASDAQ 런던증권거래소 홍콩증	권거래소 기타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일 경우, 본점 소재지의 국가 및 지역 기재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설립 목적		단복지법인 정부/외교기관 아파트 조합 종친회/동창회/경 、	명로당				
		자선단체 기타 ()					
	설립 목적 증빙 서류	정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규약 회칙 인허가신청서 기타	ł ()				
실제 소유자 목	확인서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실제 소유자	가 동일합니까? 이 이 이나오 '이	아니오'인 경우, 아래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		국적					
법인사업자 · 임의단체	확인 생략 대상 법인	국가·지자체·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실제 소유자 구분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제 소	유자를 확인 바랍니다.)					
		2단계) 1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① 최대 지분 소유자 1인	한 사람 중 최대지분소유자 1인(자연인) :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는 경우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루	세서 시원명부 이사회명부 출자자명부 사업보고	 И				
		CRETOP 등 신용정보사 보고서	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				
	실제 소유자 정보	법인과의 관계 한글 성명	영문 성명 지분율(%) 생년월일 국적 	성별 작성요령				
		1		*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 필수 1명				
		2		* 25%이상 소유 개인이 복수인 경우				
		3		* 25%이상 소유 개인이 복수인 경우				
		4		* 25%이상 소유 개인이 복수인 경우				
대리인	대리인을 통해서 가맹 ('예'인 경우, 아래 정보즈	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까? 예 성 필수)	아니오					
	주민등록번호		국적	성별 남 여				
	대리인 성명	한글 영문	휴대폰 					
	자택 주소		자택 전화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발급일자 ☐ 기타 () 운전면허증(*면허증번호))				
	본인과의 관계	법인임직원 배우자 별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월 일 대표	자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현대카드㈜ 귀중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① 가맹점 계약 체결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및 부수업무 서비스 제공 ,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채권추심 ② 현대카드 개인 회원인 경우 가맹점 유지·관리, 분쟁처리,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현대카드 개인 회원 자격으로 등록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보유·이용 기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 기간을	문 따름)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차	l무 관계가 소멸된 날임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에 동의하십니	11);?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분증/신분서류 발급일·기관,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디(연계정보), 미(중복가입확인정보), 가맹점정보(기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개설/해지 정보 등), 암호일련번호, 기타 가맹점 계약 체결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거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상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그 외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그 외 신용능력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정보, 공공요금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그 외 공공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1 / 성명 :	고유식	별정보 수집·이용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2 / 성명 :	고유식	별정보 수집·이용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3 / 성명 :	고유식	별정보 수집·이용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4/성명:	고유식	별정보 수집·이용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조회 목적	가맹점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조회 결과 귀하와의 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거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임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	 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u> </u>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일반 식별정보, 가족정보, 거주정보, 직장	 장정보, 교육·훈련정보, 기타 개인정보	<u> </u>			
· 신용거래정보		신성거래정보, 보험거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상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그 외 신용	[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그 외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 "'ㅇ ', ㄷㅇㄷ '.ㄷㄷㅇ ', ㅡ '. ㄷㅇ ' ㄷㄷㅇ 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정보, 그 외 신용능력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 그 외 공공 정보	니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정보, 공공요금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 에 동	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1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조회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2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조회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조회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조회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l 관한 사항 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	l보 제공				
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 신용정보회사 등 : 나이스평가정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받은 자의 이용 목적 종료 시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u>=</u>)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					
0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11-11 120- 10 110 1111					
· 일반 개인정보	일반 식별정보, 가족정보, 거주정보, 직장	 장정보, 교육·훈련정보, 기타 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거래정보, 금융투/	 자상품정보, 상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	 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그 외 신용	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그 외 신용능력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정보, 공공요금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그 외 공공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에 동.	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1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2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3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	협회: 여신금융협회 국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질병관리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인증업체: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닷뷰로, NHN한국 본인인증업체 본인확인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본인확인기관 채권매각업체: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엠메이드대부, 웰릭스에프인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케이자산관리대부, 리딩어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커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전업카드사 및 겸 가맹점: 분쟁 발생 가맹점	t, 기타 법령상 업무수 국사이버결제 등 앤아이대부, 베이스캐피탈 등 채권 바드, 우리카드, 하나	매각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사고방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범죄수사, 조세 관련 검사 또는 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상 의무 이행 본인인증, 채권매각 업무 신용카드 이용계약 설정·유지 및 정보주체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카드회사간 정보교환, 가맹점 분쟁 해결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협회 및 국가기관 :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 기 본인인증업체, 채권매각업체,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 본인과 제공 부터 5년 기맹점 : 기맹점 분쟁 해결 시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 기간을 따	 받는 자의 거래 종료	원일*로		
	*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임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분증/신분서류 발급일·기관,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디(연계정보), 미(중복기입확인정보), 기맹점정보(기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맹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기맹점 개설/해지 정보 등), 암호일련번호, 기타기맹점 계약 체결의 설정·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거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상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그 외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그 외 신용능력정보	크			
· 공공정보 등	l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정보, 공공요금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그 외 공공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에 동 <u></u>	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공동대표자1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2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3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공동대표자4 / 성명 :		고유식별정보 제공 에 대한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신용도 등의 평가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역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리의 경우 현대카드 -	홈페이지(www.hyundaicard.d	com) 및 고객센터(157	77-6000)를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1	인 *법인은 법인인감
	공동대표자1 / 성명		서명/	인 *법인은 법인인감
	공동대표자리 / 성명		서명/	인 *법인은 법인인감
	공동대표자3 / 성명		서명/	인 *법인은 법인인감
	공동대표자4 / 성명		서명/	인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요약 동의서

현대카드㈜ 귀중

본 동의서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카드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 이용



※ 위 동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내용을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당사 및 가맹점/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 - 신용/체크/선불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금융, 대출, 리스, 렌탈, 팩토링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 조사, 고객관리 및 상담, 캐시백, 마일리지 제공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 및 가맹점/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조사, 고객관리 및 상담, 캐시백, 마일리지 제공 등 이용 목적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24개)					
①일반 개인정보(5개)	②신용거래정보(5개)	③신용도판단정보(2개)	④신용능력정보(5개)	⑤ 공공정보 등(7개)	
일반 식별정보 등	여신성거래정보 등	연체정보 등	납세실적 정보 등	채무조정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등의하지 않음					

(2) 카드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이용



※ 위 동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내용을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등 이용 목적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4개)					
①일반 개인정보(2개)	②신용거래정보(2개)	③신용도판단정보(0개)	④신용능력정보(0개)	⑤공공정보 등(0개)	
일반 식별정보 등	여신성거래정보 등	-	-	-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3)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수집·이용 목적	MY BUSINESS 사업자카드 및 서비스에 대해 전화 안내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전화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 성	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복수선택 가능)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등의하지 않음 등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서면 □ 이메일			
	※ 상품서비스 안내에 동의하시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연락중지청구(Do Not Call)가 초기화 되며,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 중단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080-303-6000,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 현대카드 외에도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자동차, 기아 및 PLCC 파트너사(Champion Brands)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PLCC 파트너사 목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기타안내 > 카드종합이용안내 > 카드이용 > PLCC 파트너사 참고)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가맹점주 카드 안내 마케팅 개인(신용)정보 선택 제공 동의서



※ 위 동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내용을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입니다.

제공받는 자	현대카드 전속 모집인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현대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현대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4개)				
①일반 개인정보(3개)	②신용거래정보(1개)	③신용도판단정보(0개)	④신용능력정보(0개)	⑤공공정보 등(0개)
가맹점명 등	현대카드소지여부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1174 (01
공동대표자1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 서면 □ 이메일)
공동대표자2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제	디 □ 서면 □ 이메일)
공동대표자3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라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제	디 □ 서면 □ 이메일)
공동대표자4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하지 않음 □ 동의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자	지 □ 서면 □ 이메일)

[※] 신용도 등의 평가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및 고객센터(1577-6000)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 상기 목적에 동의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자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전체 동의서

현대카드㈜ 귀중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카드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 이용



※ 위 동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내용을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당사 및 가맹점/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 - 신용/체크/선불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금융, 대출, 리스, 렌탈, 팩토링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 조사, 고객관리 및 상담, 캐시백, 마일리지 제공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 및 가맹점/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조사, 고객관리 및 상담, 캐시백, 마일리지 제공 등 이용 목적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일반 식별정보, 가족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교육·훈련정보, 기타 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거래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상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신용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정보, 공공요금납부정보, 주	 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카드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이용



※ 위 동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내용을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등 이용 목적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일반 식별정보, 직장정보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거래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	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3)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수집·이용 목적	MY BUSINESS 사업자카드 및 서비스에 대해 전화 안내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전화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 용	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복수선택 가능)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서면 □ 이메일				
	※ 상품서비스 안내에 동의하시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연락중지청구(Do Not Call)가 초기화 되며,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 중단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80-303-6000, 홈페이지 : www.hyundaicard.com) ※ 현대카드 외에도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자동차, 기아 및 PLCC 파트너사(Champion Brands)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PLCC 파트너사 목록: 홈페이지 > 기타안내 > 카드종합이용안내 > 카드이용				
	> PLCC 파트너사 참고)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가맹점주 카드 안내 마케팅 개인(신용)정보 선택 제공 동의서



※ 위 동의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침해 위험, 이익이나 혜택, 동의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 내용을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입니다.

제공받는 자	현대카드 전속 모집인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현대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철회 및 계약 종료일* 까지		
	*계약 종료일이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날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현대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의는 금융거래 및 필수서비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공 항목				12
개인(신용)정보				
일반 개인정보	가맹점명, 가맹점주소, 가맹점가입일			
신용거래정보	현대카드 소지 여부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에 동의하	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신용도 등의 평가 목적 외 개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 ※ 상기 목적에 동의하는 경우 7	니다.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및 고객센터(1577-6000)를 는 자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공동대표자1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	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	5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	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서면 □ 이메일)
공동대표자2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	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서면 □ 이메일)				
공동대표자3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	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서면 □ 이메일)
공동대표자4 / 성명 :				서명/인 *법인은 법인인감
카드 상품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힘				
MY BUSINESS 사업자카드 안내 마케팅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전체 □ 전화 □ 휴대폰 문자메시지 □ 서면 □ 이메일)

카드 안내 마케팅 목적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1 장 종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신용키드 기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키드시와 기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키드사 또는 신용키드 회원, 신용키드 기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기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현대뒤드(이하 "키드사"라 함)에 키드 기맹점 기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 니다.
- ③ "해외카드"란 카드시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 ④ "카드회원"이란 카드시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 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⑤ "결제대행업체"란 카드시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기맹점 을 말합니다.
- ⑥ "수납대행기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기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기맹점을 말합니다:
- ②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⑥ "기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화원에 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 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⑨ "휴대전화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5M5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 (1) "정기결제"란 신용카드 회원 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① "정기결제사업자"란 결제대행업체와 정기결제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 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 ① 기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 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금전채무의 상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3. 예금, 적금 및 부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규정의 지급
 - 5. [관광진홍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 급(단, 외국인이 「관광진홍법」에 따라 허기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7. [시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시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8. [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9.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 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11.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백만원을 초괴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 에 따른 금전의 지급
- ② 기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키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키드사 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키드사와 가맹점은 선불키드 회원 및 고백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키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기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 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기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 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기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 점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 우, 카드사는 이를 기맹점에 안내하고, 기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신용판매

제4조(카드거래 한도)

- ① 카드시는 기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 가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 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시는 기맹점 기입 신청 승낙 후 기맹점에 송 부해 드리는 기맹점 기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기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기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기맹점의 카드 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개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기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맹점의 하위배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기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신용판매 방법)

- ① 기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 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② 기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시업자번호, 기맹점번호, 기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카드 단

- 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 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가는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 대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기맹점에 통지 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기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금액에 한하며, 기 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리항의 필수기재시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⑦ 기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매출전표 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아됩니다.
- ⑧ 기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 회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카드 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 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 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 ⑨ 신용카드 기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⑩ 기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 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이용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 예약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i) 기맹점은 기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 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로 계약이 해지된 기맹점은 기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한 신용판매가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신용판매 시 준수사항)

- ① 기방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 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기방점수수료를 전기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기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 1. 커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2. 카드 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 ③ 기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 제 매출액을 초괴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 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기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기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니다
- ⑤ 기맹점은 기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기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기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 서는 안됩니다.
- ⑧ 기맹점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기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⑨ 기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⑩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기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⑪ 기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 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 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 ② 기맹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 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기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의 2(정기결제 시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6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 조의 14를 준수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약관을 제·개정하거 나 정기결제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갱신·변경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 영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 회원 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금액이 증가 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 회원 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자 수단(서면, 전 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 한 전()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 행한 후 카드 회원 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거래 내용
-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 다. 유료 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 라. 환불 등의 거래 조건
- 마. 거래 조건을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 고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 시간 외에도 신용카드 회원 등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 철회,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인터넷 사이트
- 나. 모바일 앱
-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 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 3.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 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 기결제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 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 가.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단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비례 하여 공정한 환불 가격을 산정 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 회 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금액 산정 방법

제7조(할부거래)

- ① 카드사는 기맹점 계약 체결 시 기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 니다. 기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 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기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할부수수료 율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기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 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 거래 시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 부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시는 기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기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 발생 정도, 관례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기맹점의 할부가래 를 중지 또는 금자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 가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카드시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기맹점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시가 할부 가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기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 ① 기맹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원의 청 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 원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②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례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의 철회요청에 대한 수용이 불기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맹 점에게 있습니다.
- ③ 기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 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의 인도 또는 제공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3. 기맹점이 하지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④ 기맹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대금 환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13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장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9조(매출전표의 접수)

- ① 기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시는 해외카 도시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기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②키드시는 기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 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기맹 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기맹점수수료율)

- ① 키드사는 신용키드 기맹점과의 기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기맹점 기업. 진청을 받은 경우 기맹점 신청인에게 기맹점수수 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 맹점 기업 신청 승낙 후 기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기맹점 기업 확인서 등 에 적용 기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맹점 신 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맹점 계약 체결 전에 적용 기맹점수수료율 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을 본도 제근합니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 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 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시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

- 다. 기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 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 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 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기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기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⑦ 카드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기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⑧ 기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 신용카드 기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시는 제 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 ⑨ 제8항에 따라 기맹점수수료율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기맹점은 카드 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 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기맹점 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키드시에게 부당하게 낮은 기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키드 기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임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①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가래정보 통합조회시스 템(www.cardsales.orkr)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1조(신용판매대금의 지급)

- ① 카드사는 기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 판매대금 지급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기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 일에 지금합니다.
-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괴하여 대금지급 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기맹점은 카드시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기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 ⑤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기맹점수수료율을 곱한 기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⑥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기맹점 매출가래정보 통합조회시스 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 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맹점에 통지하 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2조(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 ①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명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기맹점의 요청에 따라 기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 하거나, 기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약관에 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 3. 기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 표를 매입하는 경우
 - 4. 제14조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카드사는 기맹점 기입 신청 승낙 후 기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기맹점 기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기맹점은 동 지 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맹점 기업을 신청하여 카드 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기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시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3조(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 ① 카드사는 기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기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기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 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 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 래취소일로부터 강영업일까지 카드사에 완압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나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체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체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사업자인 기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 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

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시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시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 우 상례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례 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 휴 대전화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압 류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 탁할 수 있으며, 세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 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기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기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 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 시 준수시항을 위반 한 경우
 -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신유교화소의 건강적합된 및 이에 즐치는 결영산 법론의 방
 - 내. 기반점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가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 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 생한 경우
 - 5. 기맹점 기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 ③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 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 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 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조 제리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 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 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 ② 제1항에서 기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 ㅇ ' 2. 기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기담 또는 협조한 경우
 -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 ③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카드사와 기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6조(회원과의 분쟁)

-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제·디단'대판매·비대면 거래 기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 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기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기맹점 거래 정지 및 계약 해지)

- ① 카드사는 기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맹 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기맹점 제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맹점자격 정지 또는 기맹점 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 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기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 1. 기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시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기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 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1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기맹점
 - 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익화된 경우 6. 기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
 - 생한 경우 및 기맹점과 연락이 불기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 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8. 기맹점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일시적 사업장 부재를 제외하고 객관 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② 카드사는 기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기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시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 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 되는 경우는 제외
- 4.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 ④ 기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시와 기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제18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카드시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기맹점이 제공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기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시는 기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기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 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시는 기맹점에 회원의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정보유축금지)

- ① 기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 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기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 증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 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시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 야 한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 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 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 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 ④ 기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⑤ 기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키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 하여야 합니다. 카드시는 기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 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이스. IT.
- ⑥ 카드시는 기맹점이 제1항 내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항을 요 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기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 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 제1항은 이 약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6장보칙

제20조(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 ① 카드사는 기맹점 기업 신청 승낙 후 기맹점에 적용 기맹점수수료율, 신용 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 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시는 가맹점에 변경시항 등의 통보시 각 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 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기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자,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카드 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 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카드시가 과실 없이 기맹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기맹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기맹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 ⑤ 카드사와 기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웨악키간 및 기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기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기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기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기맹점 표지물)

- ① 기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 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기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 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위반 시의 책임)

- ① 카드사와 기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 여야 합니다.
- ② 기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 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 당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 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는 기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신용판매 시 준수시항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제4조에 제2항에 따른 카드 거래한도 축소
 - 2. 제7조에 제4항에 따른 할부 거래 조건 조정
 -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지급의 보류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거래 정지 및 계약 해지

제23조(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 ① 이 약관은 기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기맹점 기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카드시는 기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맹점에게 '계약 만료알'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 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약관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 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 지(산·구대비표 포함)하고,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 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산·구대비표 포함)하 기료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한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 경화 경우
 - 2. 약관 개정이 가맹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시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기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기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카드시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 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한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야 한 IF

제25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① 카드시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기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기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 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 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대에 관하여 회원, 기맹점, 카드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6. 2. 22 개정)

제1조(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 제9항, 제6조 제12항, 제19조 제5항의 적 용이 유예됩니다.

부칙(2016. 12. 28 개정)

제1조(경과조치)

제12조 제나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 품 중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기맹점과 카드 사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약관 (2024.4.20 일부 개정)

제1조(목적)

① 이 부속 약관은 기맹점의 권익 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 카드 기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 정하지 아니한 시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매입 대행)

- ① "매입 대행"이라 함은 카드시와 별도 계약에 의해 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선물카드(선물전자지급수단 포함) 및 직물카드(직물전자지급수단 포함) (이하 "타사 카드"라 함)와 그 회원(이하 "타사 회원"이라 함)이 카드시와 계약한 기맹점에서 거래 시 거래 승인, 매입, 기맹점 대금 지금 등 기맹점 관련하여 운영되는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부속 약관에 따라 기맹점이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카드시가 '배입 대행'하는 "타사 카드" 및 "타사 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운영되고 "타사 회원"이 기맹점에서 신용판매 등의 거래로 발생한 기맹점 대금을 카드사가 타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회원과의 거래 시 지급하는 가맹점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③ "타사 귀드"의 거래로 인하여 타 금융기관이 기맹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맹점대금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귀드시는 타 금융기관과 함께(병존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합니다. 한편 "타사 카드"의 거관과 환경하여 발생한 타 금융기관이 기맹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도 키드시는 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해외카드의 매출전표 접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키는 중 마스터키는 (MasterCart)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비지키는(VISA) 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온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4조(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수기 매출전표 포함)'는 매출전표의 진위여부 및 회원 민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300원 영등포세무서장 후납승인 2010년 013호